##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(신장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316

발의연월일: 2025. 3. 25.

발 의 자:신장식・황운하・차규근

서왕진 · 김재원 · 민병덕

김선민 • 김준형 • 최민희

노종면 • 이훈기 • 박민규

이정헌 · 조인철 · 이준석

양문석 · 김우영 의원

(17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한국방송공사가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·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및 사장 선임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임.

이에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대 및 개편하고, 보다 민주적이고 객관적인 사장 선임을 위한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공영 방송의 진정한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함(안 제2조제28호, 제46조, 제46

조의2 및 제50조의2 신설 등).

###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8. "공영방송사"란 한국방송공사, 「한국교육방송공사법」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, 「방송문화진흥회법」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 가 최다 출자자인 방송사업자를 말한다.

제46조제2항 중 "11人"을 "15명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理事는"을 "이사는 제46조의2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"로, "대표성"을 "대표성·전문성 및 다양성"으로, "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"을 "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제청"으로하며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국회가 다음 각 목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5명
  - 가.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4명. 이경우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사람 수는 그 밖의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사람 수와 같아야 한다.

- 나. 국회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1명
- 2. 공사 임직원이 공모와 투표를 통해 다수득표순으로 추천하는 사람(재직중인 자는 제외한다) 3명
- 3. 활동기간, 활동내역, 회원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 방송·미디어·경영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
- 4. 여성, 장애, 다문화, 지역, 환경 관련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명
- 5. 공사와 지역총국의 시청자위원회가 합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2명
- 6. 국가인권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
-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체는 이사 추천 시 후보 모집, 심사, 의견수렴 등에 관한 공개적인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, 방송통신위 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46조의2(이사의 자격요건) 이사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소관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  - 1. 방송학·언론학·전자공학·통신공학·법률학·경제학·경영학· 행정학 그 밖에 방송·언론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 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

- 2. 판사·검사·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
- 3. 방송·언론 관련 단체나 기관의 임직원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
- 4. 방송·언론 분야의 이용자 보호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- 5.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15년 이상이 되는 사람
- 제49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7의2. 제50조의2의 사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50조의2(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 등) ① 이사회에 공사의 사장후 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(이하 "사장후보추천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  - ② 이사회는 사장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후보를 추천받을 경우 사장의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
  - ③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.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 가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와 같아야 한다.
  - 1. 성별, 연령, 지역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선정된 사람
  - 2. 공사 임직원이 공모와 투표를 통해 다수득표순으로 추천하는 사

람(재직중인 자는 제외한다)

- 3. 여성, 장애, 다문화, 지역, 환경 관련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
- ④ 이사회는 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,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구성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⑤ 이사회는 자격·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갖춘 후 보자를 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하여야 한다.
- ⑥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자의 경영계획발표, 면접, 숙의토론 과정을 거쳐 3인 이하의 복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여야 한다.
- ①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사장후보자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정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이사회·집행기관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) ①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 및 집행기관은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

의하여 구성되어야 한다.

② 이 법 시행 당시 재직하고 있던 공사의 이사와 사장은 이 법에 따라 이사회가 구성되고 사장이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. 제3조(다른 법률의 개정)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2호 중 "추천"을 "임명제청"으로 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~ 27. (생 략)	1. ~ 27. (현행과 같음)
<u> &lt;신 설&gt;</u>	28. "공영방송사"란 한국방송공
	<u>사, 「한국교육방송공사법」</u>
	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,
	「방송문화진흥회법」에 의한
	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 출자
	자인 방송사업자를 말한다.
第46條(理事會의 設置 및 운영	第46條(理事會의 設置 및 운영
등) ① (생 략)	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理事會는 理事長을 포함한	2
이사 <u>11人</u> 으로 구성한다.	<u>15명</u>
③ <u>理事는</u> 각 분야의 <u>대표성</u> 을	③ <u>이사는 제46조의2에 따른</u>
고려하여 <u>방송통신위원회에서</u>	<u>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</u> -
추천하고 大統領이 任命한다.	<u>대표성 • 전문성 및</u>
	<u>다양성</u> <u>다음 각 호</u>
	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방송통
	<u>신위원회에서 임명제청</u>
<u>&lt;신 설&gt;</u>	1. 국회가 다음 각 목에 따라
	<u>추천하는 사람 5명</u>
	가.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수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 람 4명. 이 경우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사람 수는 그 밖의 교섭단체 대 표의원이 추천하는 사람 수와 같아야 한다.

- 나. 국회 비교섭단체가 추천 하는 사람 1명
- 2. 공사 임직원이 공모와 투표 를 통해 다수득표순으로 추천 하는 사람(재직중인 자는 제 외한다) 3명
- 3. 활동기간, 활동내역, 회원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 방송·미디어·경영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
- 4. 여성, 장애, 다문화, 지역, 환
   경 관련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명
- 5. 공사와 지역총국의 시청자위원회가 합의하여 추천하는 사 람 2명
- 6. 국가인권위원회가 추천하는

<신 설>

④ ~ ⑨ (생 략)

<신 설>

#### 사람 1명

-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 체는 이사 추천 시 후보 모집, 심사, 의견수렴 등에 관한 공개 적인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, 방송통신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<u>⑤</u> ~ <u>⑩</u> (현행 제4항부터 제9 항까지와 같음)
- 제46조의2(이사의 자격요건) 이사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소관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  - 1. 방송학·언론학·전자공학· 통신공학·법률학·경제학· 경영학·행정학 그 밖에 방송 ·언론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 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. 판사·검사·변호사 또는 공 인회계사의 직에 10년 이상

第49條(理事會의 機能) ① 理事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・議決한다.

1. ~ 7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8. ~ 15. (생 략) ② (생 략) <신 설> 있거나 있었던 사람

- 3. 방송·언론 관련 단체나 기 관의 임직원의 직에 10년 이 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
- 4. 방송・언론 분야의 이용자보호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- 5.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15년 이상이 되는 사람

第49條(理事會의 機能) ① ------

\_\_\_\_\_

-----

7. (현행과 같음)
 7의2. 제50조의2의 사장후보추

천위원회 구성과 운영

- 8. ~ 15. (현행과 같음)
- ② (현행과 같음)

제50조의2(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 등) ① 이사회에 공사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(이하 "사장후보추천위 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 ② 이사회는 사장후보추천위원

② 이사회는 사장후보추천위원 회로부터 후보를 추천받을 경 우 사장의 임기만료 90일 전까

- 지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
- ③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10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.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와 같아야 한다.
- 1. 성별, 연령, 지역 등을 고려 하여 무작위로 선정된 사람
- 2. 공사 임직원이 공모와 투표 를 통해 다수득표순으로 추천 하는 사람(재직중인 자는 제 외한다)
- 3. 여성, 장애, 다문화, 지역, 환 경 관련 단체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 한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
- ④ 이사회는 사장후보추천위원 회에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 하여야 하며, 사장후보추천위원 회가 제3항에 따라 구성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⑤ 이사회는 자격・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을 갖춘 후보자를 사장후보추 천위원회에 추천하여야 한다. ⑥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사장 후보자의 경영계획발표, 면접, 숙의토론 과정을 거쳐 3인 이 하의 복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여야 한다.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장후보추 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사 장후보자 추천 등에 필요한 사 항은 이사회가 정한다.